

# 남산국제유치원 학칙

## 제 1 장 총칙

### 제 1 조 (목적):

주한 외국인 자녀들의 조기교육을 위한 유치원이다.

### 제 2 조 (명칭):

본 유치원은 「남산국제유치원(Namsan International Kindergarten)」이라 한다.

### 제 3 조 (위치):

본 유치원은 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 8길 8-6에 소재한다.

## 제 2 장 수업 연한, 학기 및 휴업일

### 제 4 조 (수업 연한)

수업 연한은 4년이다.

### 제 5 조 (학년)

2세 Toddler Program 1년

3세 Pre School 1년

4세 Junior Kindergarten 1년

5세 Senior Kindergarten 1년

### 제 6 조 (학기)

학기는 2분기로 나누되 1분기는 8월말에 시작하여 12월 중순에 마감하고 2분기는 1월초에 시작하여 6월초까지로 한다. 단, 매 학년도 학기 일은 학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다.

### 제 7 조 (휴업일)

추석 공휴일

추수 감사절(Thanksgiving Holidays)

크리스마스 휴일

구정

부활절 휴일

겨울, 봄, 여름방학(해당 년도 학사 일정에 준함)

대한민국이 정한 국경일

그 밖의 비상 재변 및 급박한 사정의 발생시 임시 휴업을 할 수 있다.

### 제 3 장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

#### 제 8 조 (학급수)

유치원의 총 학급수는 4학급이다.

2세반(Toddler Program) 1학급

3세반(Pre School) 1학급

4세반(Junior Kindergarten) 1학급

5세반(Senior Kindergarten) 1학급

#### 제 9 조 (학생 정원)

본 유치원의 학생 정원은 총 80명으로 하며, 학급당 20명씩으로 한다. 다만 학급당 인원은 총 정원의 범위 내에서 그 수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.

### 제 4 장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

#### 제 10 조 (교육과정)

교육과정은 미국 유치원 정규 교육과정에 준한다.

#### 제 11 조 (교과,수업일수)

독창적인 미국식 커리큘럼으로 주제별 체계적인 교육내용을 구성하여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 놀이를 통한 예체능 활동 및 생활 주제를 중심으로 한 자연 친화적 체험 학습으로 원아들의 전반적인 신체적, 감성적 발달을 돕는 통합적인 교육을 한다. 수업일수는 매년 180일로 한다.

#### 제 12 조 (고사 및 과정 수료의 인정)

각 학급의 과정을 수료하는 경우 수료증을 수여한다.

### 제 5 장 입학,재입학,편입학,전학,휴학,퇴학,수료,졸업 및 그 절차 등

#### 제 13 조 (입학)

입학 자격 -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

입학 결정 - 모든 신입생은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서류 심사를 거

쳐 학급 배정 등 교장이 결정하며 필요시 법무부, 출입국관

리사무

소 등에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.

입학 서류 - 입학원서, 부모와 학생의 여권 사본, 부모의 외국인등록증, 학생의 출입국사실증명서, 의료기록부(필요에 따라 보완서 류를 요구할 수 있다.

입학 취소 - 입학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 또는 허위로 본교에 입학할 허가를 받았거나 입학한 자는 즉시 입학할 수 있다.

#### 제 14 조 (재입학)

본 유치원을 자퇴한 자로서 다시 입학할 시에는 심사를 거쳐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.

#### 제 15 조 (편입학)

유치원에 편입학을 지원하는 학생이 있을 때에는 결원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 유치원 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제13 조에 준하는 심사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.

#### 제 16 조 (전학)

유치원에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최소한 2주전에 그 사유서를 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#### 제 17 조 (휴학)

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휴학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서에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장에 제출한다.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을 특별히 정하지는 않으나 교과 과정의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.

#### 제 18 조 (퇴학)

각 학급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총감과 교장이 결정한다.

#### 제 19 조 (수료·졸업)

각 학급의 과정을 수료하고 유치원을 졸업하는 경우 소정의 수료증을 수여한다. 당 유치원은 유아 및 유치원 교육을 하는 곳으로 특별히 정한 학위증은 없다.

## 제 6 장 수업료, 입학금, 기타의 비용징수, 장학금

#### 제 20 조 (수업료, 입학금, 기타 비용징수)

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는 매 학년초 해당년도 유치원 예산에 부합하는 금액을 산정 결정하여 징수한다. 통학 버스비는 수업료와 함께 징수하며 기타 비용은 비용이 발생하기 직전에 징수한다.

제 21 조 (장학금)

당 유치원은 유아 및 유치원 교육을 하는 곳으로 특별히 정한 장학금은 없다.

**제 7 장 교장,교원의 자격 및 임무에 관한 사항**

제 22 조 (교장의 자격 및 임무)

당 유치원의 교장은 영어권 국가에서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써 관련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하며 교사 관리 및 입학 결정등 유치원의 전반적인 관리를 맡는다.

제 23 조 (교원의 임용 기준 및 면직)

당 유치원의 교원은 영어권 국가에서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유치원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어야 하며 면직은 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을 어길 시 교장과 총감이 정한다.

**제 8 장 학생 포상 및 징계**

제 24 조 (학생 포상)

각 학급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장이 정한다.

제 25 조 (징계)

교장이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학부모에게 이를 통보한다. 징계는 교장과 총감의 판단에 따라 퇴학조치 할 수 있다.

제 26 조 (퇴학처분)

각 학급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교장과 총감이 정한다.

**제 9 장 보칙**

제 27 조 (학칙개정)

『외국인학교 및 외국인 학교의 설립,운영에 관한 규정』이 변경될 시나 학부모의 의견등을 반영하여 필요에 따라 교장과 총감의 동의하에 교육청에 인가를 받아 개정한다.

제 28 조 (시행세칙)

이 학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장이 총감과 합의하에 정한다.

## 부 칙

### 제 1 조 (시행일)

이 학칙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제 2 조 (입학,재입학,편입학,전학에 대한 경과조치)

입학,재입학,편입학,전학에 대한 기준은 『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,운영에 관한 규정』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.